



“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” 개정(2004.12.14) 고시 알림

■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‘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’ (제2004-14호)이 개정되어 2004. 12. 14자로 국립식물검역소 관보에 게재되고 시행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 골자를 안내하오니, 열처리업체에서는 필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개정 전문 및 개정안 신규 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국립식물검역소 및 한국파렛트 협회 홈페이지 참조)

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4-14호

수출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(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-14호, 2003.11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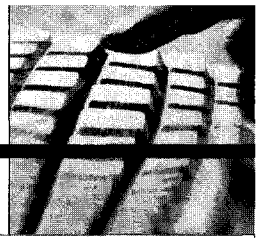
2004년 12월 14일

국립식물검역소장

수출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개정고시(주요 내용)

1. 개정사유

- 우리나라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목재포장재의 소독 건수 및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들의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
-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증명 중단조치 대상 및 기간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였음



2. 주요골자

- 용어정의에 소독처리마크를 추가하였음 (제2조)
- 열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소독처리업체 시설 등의 변경사항 신고 기관을 식물검역소 지? 출장소로 하여 열처리시설 검사 및 관리?점검 기관을 일원화 하였음 (제6조, 제10조)
- 열처리시설 검사신청 접수 후 경우 보고 없이 열처리시설 적합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기록 하였음 (제6조제2항)
- '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' 및 '소독처리마크신고증' 기재내용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하고, 증명서(신고증) 재교부 신청서 양식을 추가하여 소독처리업체가 필요할 경우 증명서(신고증)을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(제10조제3항, 별지 제10호서식)
- 소독처리증명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하고, 소독처리증명의 중단조치 실시 기관 및 중단조치 해제 기관을 지?출장소로 일원화 하였음 (제11조)
- 열처리업체에서 사용하는 온도측정장치(온도감지기 포함)를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세칙 통합고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정 받아 사용토록 열처리시설의 요건에 추가하였음 (별표 2)
-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및 훈증소독작업결과서의 발급번호 양식에 부번호를 추가하여 한 번에 여러 의뢰자들의 목재포장재를 소독했을 경우 구분해서 작업결과서를 발급토록 하였음 (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)
-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에 '열처리책임자 서명'란을 추가하고, '열처리증명방법'란을 삭제하였음(별지 제1호서식)
- 여러 컨테이너에서 실시한 MB훈증작업결과를 '훈증소독작업결과서' 한 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하였음 (별지 제2호서식)
- 국제기준(ISPM No.15)에 따라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식물위생증명서 없이 소독처리마크만 표지토록 할 것에 대비하여 '목재포장재열처리작업일지'와 '목재포장재MB훈증작업



| 식물 검역 |

일지'에 '소독처리마크표지확인' 및 '작업결과서 발급번호'란, '발급일자'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작업일지 작성요령을 뒷면에 추가하였음 (별지 제8호서식)

3. 기타사항

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4-14호 전문 및 신규 대조표는 국립식물검역소홈페이지 (www.npq.s.go.kr) 및 한국파렛트협회(www.kopal.or.kr)*홈페이지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◆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식물검역 2005년 6월 1일부터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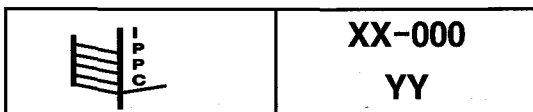
세계 여러나라(캐나다, 미국, 중국 등. 우리나라 포함)는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된 목재 포장재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서 대신 소독처리 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며, 우리나라는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검역을 2005년 6월 1일부터 실시 예정입니다. 수출전 각 국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규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

○ 규제 적용 대상

- 침엽수 목재포장재와 비침엽수 생목재 목재포장재 (짐갈개 포함)
- 가공된 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적용 제외

○ 요건 : MB인증 또는 열처리를 실시하고 아래의 소독처리 증명마크 표시



○ 요건 불이행시의 조치

- : 소독, 폐기(소각, 매립, 가공 등) 또는 반입금지 조치